



환급형 세액공제 도입의 필요성

정원석 연구위원

우리나라의 노인빈곤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노후소득원 확보가 중요함. 하지만 연금저축 납입액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 이후 저소득층 연금저축은 감소하고 있음. 그 이유로 저소득층 과세미달자 증가로 인한 연금저축 납입유인 감소가 지목되고 있음. 저소득 과세미달자에 대한 연금저축 납입유인을 제공하기 위해 과세표준이 0원이더라도 연금저축 납입액에 대한 세액공제는 환급해주는 환급형 세액공제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환급형 세액공제 도입으로 저소득층 연금저축이 2013년 수준으로 제고될 경우 증가하는 연금자산은 1조 1,845억 원, 해당 계층 납입자에 대한 세액공제액은 약 1,776억 원이 될 것으로 추정됨

- 국민이 충분한 노후소득원을 확보하기 위해 개인연금의 준비는 필수적이거나¹⁾ 대표적인 개인연금인 세제적격 연금저축(이하 '연금저축')의 가입률과 납입수준은 높지 않음
 - 근로소득자의 연금저축 가입률은 13.16%, 평균납입액은 261만 원으로²⁾ 특별한 정책적 지원이 없다면 연금저축이 노후소득에 기여하는 비중이 확대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
 - 또한 금리상승으로 인한 가계의 가처분소득 감소와 세액공제 도입으로 연금저축 가입률 및 납입액은 정체될 것으로 보임
- 특히 세액공제 도입 이후 고소득층의 연금저축은 유지된 반면 저소득층의 연금저축은 감소함
 - 연소득 2,000만 원 이하 근로자의 경우 연금저축 가입률과 평균 납입액이 2013년 1.17%와 159만 원, 2014년 0.83%와 62만 원, 그리고 2015년 0.37%와 39만 원으로 감소하였음
 - 반면, 연소득 8,000만 원 이상 근로자의 연금저축은 소폭 감소함

1) 강성호·류건식(2016), 「공·사연계연금 도입 필요성과 설계방향」, 『KiRi Report』, 제395호, 보험연구원

2) 2015년 국세통계 연보자료를 재구성

〈표 1〉 소득수준에 따른 연도별 근로자 연금저축 납입액

(단위: %, 만 원)

구분	~2천만 원		2천만 원~4천만 원		4천만 원~6천만 원		6천만 원~8천만 원		8천만 원 초과	
	가입률	평균 납입액	가입률	평균 납입액	가입률	평균 납입액	가입률	평균 납입액	가입률	평균 납입액
2012	1.16	129	11.6	192	34.0	247	52.8	286	66.3	320
2013	1.17	159	10.0	201	31.6	249	51.3	289	65.7	323
2014	0.83	62	7.9	156	28.9	242	49.5	287	64.4	322
2015	0.37	39	6.1	147	25.4	236	47.6	281	63.3	319

자료: 국세통계연보 각 연도 자료를 재구성

■ 세액공제 도입 이후 저소득층의 연금저축 감소는 과세미달자 증가의 영향인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결정세액이 0원인 경우에도, 연금저축 납입액에 대한 세액공제는 환급해 주는 환급형 세액공제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과세미달자의 경우 연금저축을 납입한다 해도 환급받을 세액공제액이 없으므로 연금저축을 납입할 유인이 없음
 - 연금저축 납입액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 이후 연소득 2,000만 원 초과 4,000만 원 이하 소득자의 과세미달 비율은 2013년 8.7%에서 2014년 35.1%로 4배 이상 상승하였음

〈표 2〉 소득수준별 과세미달 근로자 비율

(단위: %)

구분	전체	~2천만 원	2천만 원~4천만 원	4천만 원~6천만 원	6천만 원~8천만 원	8천만 원 초과
2012	32.7	61.6	9.5	1.2	0.1	0.0
2013	31.3	60.7	8.7	1.0	0.1	0.0
2014	48.1	81.0	35.1	12.9	1.2	0.2
2015	46.8	81.2	32.8	11.8	1.0	0.2

자료: 국세통계연보 각 연도 자료를 재구성

■ 2015년 국세통계연보 분석 결과 연금저축을 납입한 과세미달 근로자의 숫자는 약 20만 명, 이들이 납입한 연금저축 납입액은 2,542억 원, 돌려받지 못한 세액공제액은 376억 원으로 나타남

- 따라서 단순계산으로, 환급형 세액공제 도입으로 인한 과세미달 연금저축 납입 근로자에 대한 재정지출은 약 376억 원이 될 것으로 보임
 - 이 중 연소득 2,000~4,000만 원 소득자가 돌려받지 못한 세액공제액은 247억 원, 4,000~6,000만 원 소득자가 돌려받지 못한 세액공제액은 102억 원으로 나타남

- 따라서 환급형 세액공제로 인한 추가적인 재정지출의 대부분은 연소득 4,000만 원 이하 계층에 집중될 것으로 보임
 - 세액공제를 받지 못한 376억 원 중 약 263억 원(70%)이 연소득 4,000만 원 이하 계층에 집중됨

〈표 3〉 소득수준별 과세미달 근로자 연금저축 납입 현황

구분	~1천만 원 이하	1천만 원 초과~2천만 원 이하	2천만 원 초과~4천만 원 이하	4천만 원 초과~6천만 원 이하	6천만 원 초과	계
가입자 수	359명	26,588명	132,688명	37,654명	4,052명	201,341명
납입금액	0.49억 원	105억 원	1,649억 원	695억 원	93억 원	2,543억 원
공제세액	0.07억 원	16억 원	247억 원	102억 원	11억 원	376억 원

자료: 국세통계연보 2015년 자료를 재구성

- 연소득 4,000만 원 이하 근로자에게 환급형 세액공제를 적용해 해당 계층의 연금저축 가입률 및 납입액이 2013년 수준으로 제고될 경우 동 계층의 연금저축 납입액은 1조 1,845억 원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는 2015년 해당 소득계층의 연금저축 납입액인 4,483억 원의 약 2.6배임

- 2015년 소득분포 및 과세미달자 비율에 2013년 소득수준별 연금저축 가입률과 평균납입액을 적용하여 분석한 결과 동 소득계층의 연금저축 납입액은 1조 1,845억 원이 될 것으로 예상됨
- 이에 대한 비용이라 할 수 있는 해당 소득계층에 대한 총 세액공제액은 1,776억 원이며 이중 과세미달자에 대한 세액공제액은 733억 원으로 예상됨
 - 1,776억 원의 재정지출(세액공제)로 약 1조 1,845억 원의 노후소득원 적립을 유인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

〈표 4〉 환급형 세액공제 도입으로 연금저축 가입률 제고 시 납입액 및 세액공제액

구분	~2천만 원 이하	2천만 원 초과~4천만 원 이하	합계
근로소득자 수(2015년)A	7,657,059명	4,858,285명	12,515,344명
가입률(2013년)B	1.7%	10.0%	-
평균납입액(2013년)C	159만 원	201만 원	-
총납입액(D=A×B×C)	2,070억 원	9,775억 원	11,845억 원
세액공제(E=D×15%)	310억 원	1,466억 원	1,776억 원
과세미달률(2015년)F	81.2%	32.8%	-
과세미달자에 대한 세액공제 총액(G=E×F)	252억 원	481억 원	733억 원

주: 국세통계연보 2013년과 2015년 자료를 활용하여 산출

- 단 본 보고서에서 분석한 환급형 세액공제로 인한 저소득층 연금저축 가입률 및 납입액 제고 효과는 강한 가정을 기반으로 한 것임을 감안할 필요가 있으며 더욱 정밀한 정책효과 분석을 위해서는 향후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함 **kiri**